

모금의 대상	모 금 액	
	국 내	국 외
3.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000원	미화 2불에 해당하는 금액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60호, 2004. 10. 8. 공포·시행)되어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세분화되고 여권발급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여권발급시 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을 조정하고 미화 1불당 약 800원으로 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미화 1불당 약 1천원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

2004년12월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 승 규

○대통령령 제18637호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주식회사일 것
2. 제1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 것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작성할 것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①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2.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 3. 제1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4. 사업계획서
- 5.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내용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전자어음을 등록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지급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당해 지급금융기관을 어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방(第三者方)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당좌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용평가기관 또는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전자어음 발행한도에 관한 의견 및 발행인의 연간 매출액·자본금·신용도·당좌거래실적 등을 종합하여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어음의 발행을 위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1. 관리기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관리기관이 새로이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의 전자어음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미 등록한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거래정지 중에 있는 자
- 2. 법 또는 이 영과 어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 3.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①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로 하여금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발행인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하 “수취인등록”이라 한다)사항은 전자어음을 수령할 자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로 한다.

③관리기관은 수취인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취인등록을 한 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배서를 하거나 전자어음의 지급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①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인등록 또는 수취인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권한없이 등록한 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전자어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등록한 자가 등록의 종류에 따라 전자어음행위를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증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경유한 후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①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자어음에는 복본 또는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발행·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위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어음을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소지인의 정보처리조직에서는 전자어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융기관에 송부된 전자어음에는 지급제시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법 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전자어음에 첨부할 전자문서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과 일체가 된 문서로 하고 전자어음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어음의 지급) ①관리기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금을 수령하는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언이 기재된 전자어음을 발행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거절)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거절 전자문서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제시를 위하여 송신되는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이 거절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전자어음의 일부가 되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이 적법하게 금융기관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거절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제시를 위한 전자어음의 여백에 지급거절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는 문언을 기재한 후 당해 전자어음을 즉시 소지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지급제시용 전자어음을 소지인에게 송신한 때에는 소지인이 보관하는 전자어음의 원본이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거절된 지급제시용 전자어음을 어음의 원본으로 본다.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거부) ①전자어음의 소지인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전자어음의 반환 양식을 기입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 관리기관은 당해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전자어음의 수신자가 법무부령이 정하는 전자어음의 수령거부 양식을 기입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관리기관에 통지한 경우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①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이용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자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1.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기술인력을 합한 수는 10인 이상일 것
 -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
 -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1인 이상
 -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인 이상

라. 공인회계사 또는 금융업무나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 재정능력

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할 것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발행·배서·보증·지급제시·지급·지급거절 및 지급거절증서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나. 전자어음의 소구(遡求)·반환 및 수령거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다. 전자어음의 송·수신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어음거래기록을 생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라.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마. 그 밖에 전자어음거래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시설 및 장비

4.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관리기관의 규정

③관리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리기관의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시설 및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 ①관리기관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제15885호
관
부
2004.12.31. (금요일)

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문서 : 발행인이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
- 2. 지급이 이루어진 전자어음 : 지급된 날부터 5년. 다만, 발행인이 10년간 보존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하고, 발행인의 보존요구에 따라 보존함에 있어서 5년을 초과하는 보존에 따른 비용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 3.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자어음 : 당해 전자어음에 관한 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어음을 발행한 날부터 3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록을 2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록은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자는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발행인의 허락을 얻은 자에 한한다.

②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소지하는 전자어음의 진위

- 2. 소지하는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3. 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상법·증권거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정보

③어음발행인의 허락을 얻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어음발행인이 관리기관에 통보한 범위 내의 정보로 한다.

④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동의한 경우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 유통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 등의 정보를 소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법에 의한 전자어음, 어음법에 의한 어음 또는 수표법에 의한 수표를 지급거절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파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 화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화의개시신청 또는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⑥관리기관은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⑦관리기관은 지급을 한 금융기관이나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한 전자어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전자어음 거래 약관) ①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의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교부와 설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약관의 교부와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이용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어음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절차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①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상태에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전자문서로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하며, 이 장치에 이의에 대한 처리

기한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때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 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법학 또는 경제학을 전공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비자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전자거래 또는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와 시설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를 관리기관으로 본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전자어음의 관리가 안전한지 여부
3. 발행인의 등록이 법령 및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4.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지 여부
5. 전자어음의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6. 관리기관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7. 관리기관이 전자어음 관련 기록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제19조(협력 요청)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이유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197호, 2004. 3. 22.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전자어음을 일반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전자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전자어음의 등록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영 제3조)

- (1) 모든 전자어음거래를 관리·보존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잘못 지정할 경우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2)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법령이 정하는 전자어음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
- (3)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

여 전자어음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의 안전성 확보(영 제7조제2항)

- (1)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 외의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어음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해킹 등의 방지가 어렵고 종합적·체계적인 통제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음.
- (2)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모든 전자어음행위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어음행위가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경유하여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함.
- (3)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어음의 위·변조 등 방지(영 제8조제2항)

- (1) 전자적 거래수단에 대하여는 위·변조기술이 급격히 발달하여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음.

(2) 전자어음에는 복본 또는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도록 하고, 전자어음이 발행·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함.

(3) 전자어음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기술·재정능력 및 시설기준(영 제12조 제2항)

(1)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일정한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어음관리기관은 ①정보통신기사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금융업무 또는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 해당 분야 경력자를 10인 이상 고용하고, ②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③이용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접속하여 전자어음의 유통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관련정보를 동시에 등록·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3)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산규모를 갖추고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여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어음 정보제공 요청권(영 제14조)

(1) 전자어음을 이용하는 자가 발행인의 결제능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어음 부도 등이 발생하고 어음거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2)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전자어음 발행인의 허락을 얻은 자는 전자어음의 진위, 발행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 전자어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어음을 거래수단으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쇄부도 등 어음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영 제18조)

- (1) 다수의 이용자가 관련되는 전자어음 거래에 있어서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2)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설·장비·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3) 법무부장관이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여 성공적인 전자어음제도를 시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사정원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김 승 규

○대통령령 제18638호

검사정원법시행령중개정령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검사정원표

직 위	계	검찰총장	검 사												
			대검찰청차장검사·	고등검찰청검사장	대검찰청검사장	지방검찰청검사장	고등검찰청차장검사	고등검찰청부장검사	지방검찰청차장검사	부러두는지청의지청장	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고등검찰청검사	지청	검찰연구관
합	계 1,587	1	6	30	3	24	21				276	16	21	9	1180
대검찰청	39	1	1	7									21	9	
서울고등검찰청	64		1	1	3						59				
대전고등검찰청	11		1	1							9				
대구고등검찰청	12		1	1							10				
부산고등검찰청	14		1	1							12				
광주고등검찰청	12		1	1							10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189			1	3						29				156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51			1	1						6				43